논단

기업경영과 직무발명제도 (完)

목 차

Ⅰ. 직무발명제도
1. 의의
2. 요건
3. 직무발명의 인정
Ⅱ. 직무 발명제도의 운영
1. 직무발명관리 기구
2. 직무발명의 평가
3. 직무발명의 보상
4. 직무발명의 이해관계
Ⅲ. 직무발명의 역할
1. 독점배타권 확보
2. 기술혁신
3. 국제경쟁력 제고
4. 기업의 성장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이 글은 기업의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상에 발표된 원고를 수집, 분석, 요약한 것임. (편집자 주)

〈전호에 이어 계속〉

① 특허권은 100만원
② 실용신안권은 50만원
③ 의장권은 30만원

기업도 상기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 발명인인 종업원이 보상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

(4) 실적보상

① 실적보상의 의의

실적보상(실시시 보상이라고도 함)은 특허발명의 실시성적에 따라 금액지급하는 보상형태이며 발명의 경제적 척도를 기준으로한 가장 대가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발명의 정확한 이익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실적보상의 실무를 원활하게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정기준의 작성보다 어떻게 하면 자사의 업무체계에 적합한 규정을 정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② 보상대상요건

실시보상의 안건은 설정된 권리 가운데서 실시효과가 현저하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온 발명이 대상이 된다. 이때의 실시이익에는 자사실시에 따르는 직접·간접의 이익외에 타사에 실시허여를 해서 얻은 로열티 수입, 권리를 양도해서 얻은 로열티 수입, 권리를 양도해서 얻은 매각수입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특허출원 중에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도중에 포기하던가 혹은 취하하던가 심사청구를 유보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처치한 안건에 대해서는 권리화 안건과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보상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직 이것들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데도 포기, 취하 혹은 심사청구유보로 인한 이유(경위, 의도), 권리성립성(특허, 등록성), 실시에 의한 사업공헌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는 등의 진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③ 실적보상금 산정

각종 보상금의 산정방식에는 정액법, 평가점수법 및 이익 슬라이드법이 있는데 실적보상의 경우에는 후이자의 방법이 사용된다.

평가점수법은 경제적, 기술적, 독점적 그 밖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채점하고 점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일이 없이 산정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지만 채점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요소가 있다.

이익 슬라이드법은 실제로 얻어진 이익금액을 기초로 해서 보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객관적인 경제가치에 균형잡힌 보상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잘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면이 있다.

따라서 평가점수법과 이익슬라이드법을 보완적으로 종합해서 산정기준을 작성하고 있는 예도 많다.

④ 실적의 조사

실적보상의 실무는 대상발명의 실시상황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실적조사에는 특허부처가 독자로 조사하는 방법과 발명실시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보고형식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양식의 조사용지를 정비해 두고 반기 또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정해 두면 된다.

조사의 항목은 산정방식이 평가점수법인 경우에는 채점에 필요한 각종 실정 데이터, 그리고 이익 슬라이드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이익의 산출에 필요한 금액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이익 슬라이드법에 필요한 금액데이터는 발명의 카테고리 또는 실시의 상태에 따라 다음 4항목으로 나뉘어진다.

㉮ 발명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금액(이익)

㉯ 자사설비 또는 제조공정에의 적용에 의한 원가소멸이익

㉰ 타사에 실시권을 주고 얻은 실시료 수입이익

㉱ 특허권을 제3자에 양도(매각)해서 얻은 처분이익

조사보고서는 될 수 있는 한 보고사항을 기입하기가 쉬운 양식으로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실시평가

실시평가는 조사한 실적에 의거해서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평가하고 최종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미리 작성된 평가산정기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보상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실무적이다.

아래에 평가점수법 및 이익 슬라이드법의 요점과 구체적 예를 제시한다.

㉮ 평가점수법

평가점수법에서 채점대상이 되고 있는 평가요소에는 경제적가치, 기술적 수준, 권리의 독점성,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단위 등의 항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항목에 점수범위를 정한 몇개의 웨이트구분을 마련해서 평가기준표로 하고 이것과는 별도로 종합점수와 보상금액을 대응케 한 등급표(점수

〈표 2-1〉 평가기준표

1. 경제적 가치(25점)	
(1) 수익공헌도가 현저하게 큼	21~25 점
(2) 〃 가 매우 큼	16~20
(3) 〃 가 보통	6~15
(4) 〃 가 낮음	0~ 5
2. 기술적 수준(10점)	
(1) 독창적인 기술	8~10
(2) 개량적인 기술	4~ 7
(3) 아이디어적인 기술	0~ 3
3. 권리의 독점성(10점)	
(1) 완전히 독점가능	8~10
(2) 무상실시권자가 있음	4~ 7
(3)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음	0~ 3
4. 발명자의 직위(5점)	
(1) 발명하기 힘든 직위	4~ 5
(2) 발명을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직위	2~ 3
(3) 발명하기에 용이한 직위	0~ 1
총 합 점 수	

〈표 2-2〉 점수표

등급	보상금	총합점수
1급	150만원	45~50점
2 〃	100 〃	35~44 〃
3 〃	75 〃	25~34 〃
4 〃	50 〃	15~24 〃
5 〃	25 〃	5~14 〃

표)를 준비해 둔다.

실적평가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평가기준표로서 각 평가요소마다 채점하고 그 종합점수를 등급표와 대조해서 순위를 정하고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에 평가채점자는 특허담당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 경리, 영업 등 타부서의 책임자도 포함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이익 슬라이드법

이 방식은 발명을 적용해서 얻은 이익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발명내용과 실시의 형태에 따라 이익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상위하다.

㉠ 발명이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 : 제품판매금액×이익률×발명적용율

㉡ 발명이 제품의 제조에 적용되는 경우 : 상기 ㉠의 경우와 같음

㉢ 발명이 자가소비재 또는 그 제조에 적용되는 경우 : 종래의 구입가격 또는 제조원가－발명적용에 의한 제조원가=(원가소멸이익)

㉣ 발명이 자사의 생산설비에 적용되는 경우 : 종래설비에 의한 제조원가－발명적용설비에 의한 제품원가=(원가 소멸이익)

㉤ 타사(타인)에 실시권을 허여했을 경우 : 실시료수입액

㉥ 타사(타인)에 특허권을 양도(매각)했을 경우 : 양도(처분) 수입액

이들 가운데서 ㉭와 ㉮에서 산정요소로 되어 있는 이익률 및 발명적용률은 모두 감액요소가 되는 계수이다. 발명적용율은 제품자체의 판매이익을 100으로 했을 때의 제품 또는 제법에 대한 발명의 적용정도에 따라 정한 감율계수이며 「발명점유율」, 「기여계수」 등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보상금은 상기 이익액에 회사의 공헌도 및 회사가 받아야만 할 이익을 고려한 일정의 감액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이 경우 이익액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율을 증대하는 漸減슬라이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도 많다.

이 방식은 적용의 이론적 근거의 시비를 별도로 하면 보상금액을 적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효하다(예를 들면 국가공무원의 실적보상산정표).

〈표 3〉 실적보상금산정기준

발명의 실시상태	산 정
제품자체의 발명	판매금액×표준이익률×$\frac{10}{100}$
제품개량의 발명	판매금액×표준이익률×개량가치율
	(0.8, 0.6, 0.4)×$\frac{10}{100}$
방법, 생산기기등의 발명	원가소멸이익액×$\frac{10}{100}$
허여계약한 발명	실시료 수입액×$\frac{10}{100}$
처분한 발명	처분수입액×$\frac{10}{100}$

〈주〉

(1) 표준이익율은 평가기간에서의 대상제품의 평균경영이익율로 함.

(2) 개량가치율은 생산된 물품중의 발명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의 평가, 현저(0.8), 중정도(0.6), 약간있음(0.4)의 3단계 감액계수로 함.

(3) 보상금액은 1인에 대해서 50만원을 한도로 함.

(5) 처분보상

회사소유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 실시허여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을 참작하여 발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현행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frac{30}{100}$

②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액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 : (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 $\times \frac{20}{100}$ ＋30만원

③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 (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 $\times \frac{10}{100}$ ＋ 210만원

이상의 액수를 발명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참작하여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국내 모회사의 특허권처분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허여한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출원 유예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되 출원을 하지 애하고 회사가 Know-How 등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직무발명을 한 자에게 행하는 보상이다. 이때 보상액은 전술한 보상기준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7) 각 보상방법의 병용

상기 각항의 보상방법을 병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출원보상과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 또는 등록보상,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을 병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다. 보상금의 지급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권리기간 만료까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2년마다,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면 지급횟수는 특허의 경우에는 최고 5회가 된다.

(2) 지급방법

실적보상은 금액이 많아짐으로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에 기타 표창(근무표창, 공로표창 등)과 함께 감사문을 첨부해서 지급하고 또한 사보 등에 게재해서 발명장려의 일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의 회사들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고 회사가 실시하여 회사경영실적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다음의 율로 그 발명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회사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0%

㉯ 회사수입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

㉰ 회사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

㉱ 회사수입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

다만, 발명인 1인당 연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급방식의 유형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대가 지급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정액법…보상금액의 액을 사례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

㉯ 채점법…정액법과 유사하나 발명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은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발명은 낮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

㉰ 슬라이드법…발명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 보상의 유의사항

(1) 특수한 출원에 대한 보상

일반적으로 보상대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모기관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571사중 "보상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기업의 비율은 분할출원 10%, 병합출원 12.4%, 다항 크레임 4.2%로 되어 있다. 그 외에 변경출원에 대한 보상은 거의 안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출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출원(제1국 출원)이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적다.

(2) 권리간의 보상금액차

정액보상의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에서 금액차가 정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특허를 100으로 했을 경우 실용신안 60 의장 50정도이다.

(3) 공동발명의 보상

원칙으로서 각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지급되게 되는데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균등하게 지급되는 예도 적지않다.

(4) 불출원발명의 보상

출원하지 않는 경우의 요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중에서 출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발명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대상발명을 반환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발명에 노우하우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책으로서 출원을 그만두는 케이스에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서 출원안건과 동일한 보상취급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로 출원유보한 발명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상하는 예도 볼 수가 있다.

(5) 중도처분 출원에 대한 보상

심사불청구, 포기, 취하, 의견서 미제출, 특허료 미납 등의 처분이 해당되지만 그 안건의 사정에 따라 보상의 취급이 다르다. 즉 처분이 특허될 가망이 없다는 객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공개전 포기라고 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중도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원에 준해서 보상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사망 또는 퇴직한 발명자에의 보상

발명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본인이 사망 또는 회사를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리고 퇴직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7) 세법상의 취급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것에 한해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권리설정등록전에 받는 출원보상금에 대해서는 우선 소득세를 납부한 후 권리가 설정등록된 후 환수받을 수 있다.

4. 직무발명의 이해관계

가. 권리승계

(1) 취급

직무발명에 관한 법적 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특허받을 원시적 권리는 종업원에 속하나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한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의하여 특허받을 권리 및 특허권의 예약승계가 가능하며 전용실시권의 예약설정도 가능하나(외국의 많은 기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종업원 채용시의 근무계약에 예약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은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대가 청구권)가 주어진다. 또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는 법정의 통상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도록 정하는 예약승계 또는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민법상 유질계약금지의 원칙(민법 제339조)과 그 취지가 유사한 것으로 발명전의 예약이 사용자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被用者 등에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한데서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2) 대가

승계의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의 이익 및 그 발명이 생산되기

까지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는 피용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대가란 무엇인가,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이다. 또한 대가지불 운용에 있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로서 발명을 생산하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특정인에게 집중되기 쉬우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도가 거의 적용될 수 없는 점, 기술계 종사원일지라도 현장근무자는 발명을 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인사관리상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 각 기업은 상한을 설정한 일정한 한도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3) 대가범위와 기준

대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결정자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가지불의 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형편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는 발명의 취급, 이익산정불능의 발명에 대한 대가의 산정 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4) 대가지불

지불방법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일시불이나 분할불은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실적보상은 일종의 분할비로 생각된다. 출원보상이나 등록보상은 대가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지불되는 일시불로 보아야 된다. 그러나 실적보상, 등록보상 및 출원보상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일시불 또는 분할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다.

나. 통상실시권 설정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원시적 권리는 발명인이 종업원에 귀속하나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은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의 일종이다. 이 경우 사용자 등이 취득하게 되는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실시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실시권일 뿐만 아니라 사업과 함께이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실시권을 임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점권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 규정은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사용자 등이 상당한 설비, 자료, 자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발명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어 둔 것이다.

Ⅲ. 직무발명의 역할

1. 독점배타권 확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설정을 하면 권리자만이 생산·수익·처분하는 「독점권리를 소유」하고 그 권리의 실시 및 사용에 대한 「기술모방이 배제」되며 강력한 법적보호로 권리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발명기술 독점에 따른 중복연구가 배제되므로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2. 기술혁신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은 발명기술에 대한 권리독점으로 인하여 더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 「신기술이 축적」되며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복연구가 방지」된다. 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도입 소화 개량하는 등, 단계적 개량 발명에 의하여 「개량기술개발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술의 집약화」를 이루어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특허권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투입에 비해 산출의 증대에 따른 이윤의 극대화로 획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3. 국제경쟁력 제고

우리는 직무발명으로 얻은 특허권의 독점배타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외수출주도국에 등록하므로서 그 나라에 상품을 「독점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발명을 통하여 우리 기술을

신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상표의 상품이 등록된 나라에 독점수출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수출시장 확대」로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술과 상품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며 우리 경제는 호조를 이루게 된다.

4. 기업의 성장

기업에 있어서 기업경영의 일익을 차지하는 기술개발의 역할이 최근 매우 커지고 있어 기술혁신의 여부에 따라 기업성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술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을 권리화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경영관계를 살펴 본다.

가. 기술개발의 효과

기업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로 독점권이 주어짐으로써 그 분야의 불필요한 연구개발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증대의 효과」가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독점권에 의한 수익증대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재투자가 가능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시킨다.

기업 및 발명가는 특허권 취득경쟁에 의하여 하나의 특허발명에 대한 우회 발명과 개량발명이 다수 출현함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진다. 연구개발자는 특허권에 의한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여 「기술개발 의욕이 고취」된다.

나. 기술개발의 직무발명 운영

기업은 경쟁사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취득상황과 기술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특허정보로 인한 연구자의 기술지식이 높아지고 「신기술개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선행특허문헌에 의거 「중복연구개발 및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다. 시장에서의 우위확보

상품의 제조·생산·판매자는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자의 독점배타권에 의한 기술의 독점으로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한

○ 기술혁신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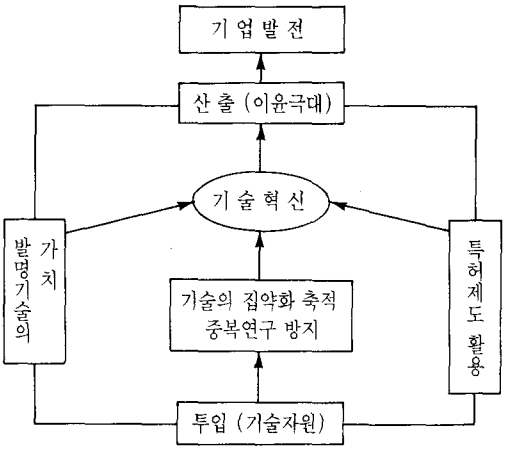

○ 국제경쟁력제고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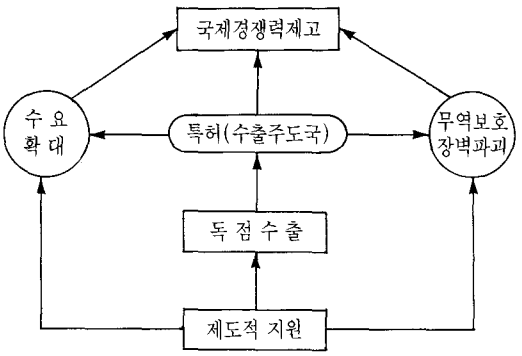

외국에 이전시켜 유리한 기술교류의 촉진은 물론 창작으로 얻어진 고도의 「기술집약상품을 생산·수출」하게 된다. 이로서 국제시장에서의 고객 흡인력이 높아져 수요가 창출되고 확대됨에 따라 「해외시장의 다변화」로 통상의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는 무역장벽을 손쉽게 넘어 우리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국제무대의 폭넓은 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제고된다.

또한 우리 상표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자타상품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에 의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요자의

다. 그리고 「경쟁자의 모방을 제외」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라. LICENSING에 의한 수입

기업과 연구개발자는 기술개발투자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유상으로 타사에 실시허여함으로써 「최초의 투자를 회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시료 수입은 개발기술의 부수적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마. CROSS LICENSE에 의한 기술도입

기업이 독점의 기술과 직무발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CROSS LICENSE에 의하여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기술도입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특허분쟁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기술개발의 경우에 중요한 부분만을 자사에서 개발하고 기타 필요한 기술은 CROSS LICENSE에 의해 기술도입을 하면 개발과 직무발명을 촉진시켜 「우수한 제품을 조기에 탄생」시킬 수 있다.

바. 무역면에서의 효과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에 직무발명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개발기술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그 기술이 획기적인 것이라면 「시장확보」와 동시에 「RISK를 경감」할 수 있으며 「활발한 무역이 전개」된다.

사. 기타 효과

기업은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의한 상품의 특징을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특허관리」가 이루어진다. 〈♣〉

안 발명특허품 실시알선 신청 내

본회는 생활용품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실용화되지 않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발굴, 본지를 통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우수발명의 기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발명특허품 실시 알선"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명특허품의 실시알선(권리양도,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을 원하시는 발명가께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본회에 신청하시면 귀하의 권리내용 및 희망사항을 소개하여 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대상 : 특허, 실용신안, 의장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발명
2. 신청방법 : 소정 양식에 의거 수시로 접수
3. 게재료 : 무료
4. 접수(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별명장려관(135-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종합전시장 별관 2층 전화 : 551-5571~2